


2017년 제1회 청양군 지방임기제 (일반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청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청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예정직급	인 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천문대 운영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칠갑산천문대 운영 관리	2년 (주40시간) (5년 범위 안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무대조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운영 관리	2년 (주35시간) (5년 범위 안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20세 이상인 자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 거 주 지: 제한없음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임용)자격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천문대운영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공분야: 천문우주, 천문학, 우주과학, 천문대기, 지구과학 등 ※ 직무경력: 천문우주, 천문학 등 관련기관에서 천체관측 업무 담당
무대조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9급 또는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3. 2. ~ 3. 3.	2017. 3. 7.	2017. 3. 13.	추후 통보	2017. 3. 14.

나.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3. 2. ~ 3. 3. (근무시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041-940-2753)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청양군수입증지 5,000원)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라.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3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주민등록 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아.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에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041-940-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